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제2077호) 개정·공포 알림

1.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077호)이 2026. 1. 2.자로 불임과 같이 개정·공포(시행: 2026. 3. 1.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>

- 1.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마련
- 2.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음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 자동차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 확대

2. 아울러, 개정법률은 2026.1.2.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불임 :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077호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관계부처, 본부(57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8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(54개 전부서), 지자체 및 관련 협회, 산하기관 등



주무관	손익재	연구관	홍정미	식품안전정책	전결 2026. 1. 2.
				과장	최종동
협조자					
시행	식품안전정책과-7	(2026. 1. 2.)	접수		
우 28159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	/ www.mfds.go.kr			
전화번호	043-719-2014	팩스번호	043-719-2000	/ sij0301@korea.kr	/ 대국민 공개